

##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제안년월일 : 1999. 2. 4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경직된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직장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의위원 선임에 있어서 일부조문중 “선임되도록 할것”을 “선임되도록 한다.”로 하고 “선임할 것”을 “선임하여야 한다”로 자구수정(안 제8조 제3항 제1-2호)

##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와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(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) 제3항 제1호중 “선임되도록 할 것”을 “선임되도록 한다.”로 하고 동조 제3항 제2호중 “선임할 것”을 “선임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) ① - ② (생략)	제8조(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) ① - ② (생략)
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·직급별·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	③ _____ _____ _____
1.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·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<u>선임되도록</u> 할 것.	1. _____ _____ <u>선임되도록</u> 한다.
2.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<u>선임할</u> 것.	2. _____ _____ <u>선임하여야</u> 한다.